

국제협력위원회 규정

제정 2015. 04. 15.
제3차 개정 2019. 06. 25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와 국외 기관과의 국제 교류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위원회(이하 "위원회")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국외 기관과의 제반 교류 및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
2. 국외 기관과의 교류 계획에 관한 사항
3. 국외 기관과의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
4. 우리대학교의 외국 홍보에 관한 사항
5. 외국인 어학연수생 모집,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
6. 국제교류 관련 만족도 조사,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(개정 2017.06.27)
7. 기타 국제 교류 업무에 필요한 사항 (신설 2017.06.27)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**대외협력처장**, **학생행복처장**, 입학홍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 (개정 2017.05.02., 2019.06.25)

② 위원장은 **대외협력처장**으로 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 (개정 2017.05.02., 2019.06.25)

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.

제5조(보고) ①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 한다.

②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,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7조(운영세칙) 이 규정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.

부 칙 (기획예산부-244, 2015.04.15)

이 규정은 2015년 0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기획예산부-191, 2017.05.12)

이 규정은 2017년 05월 0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기획예산부-284, 2017.06.29)

이 규정은 2017년 0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기획예산팀-330, 2019.06.25)

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